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원희룡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1. 의결주문

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‘드라이브 스루’ 매장 설치 시 도로관리청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하도록 「도로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협의대상 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도로관리청이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점용허가를 할 때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대상 장소의 관리자와 협의해야 할 시설을 구체화(안 제54조제6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9.12. ~ 9.25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없음

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법 제61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자동차(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.)에 승차한 상태로 하차하지 않고 식품(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.)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를 말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4조(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) ① ~ ⑤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54조(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⑥ 법 제61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자동차(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.)에 승차한 상태로 하차하지 않고 식품(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.)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를 말한다.</u>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914